확*민 / 환경관리과 / 2025-01-17 14:13:08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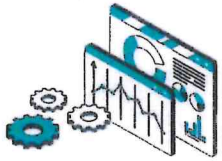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표 9] 제3호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상시 전송, 자체개선 등) 에 따라 관리해야 합니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측정결과 전송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측정결과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에 상시 전송해야 합니다.

※ 대기배출 및 방지시설의 동시 가동여부(전류), 대기방지시설 상태정보(차압, 온도, pH 등) 확인

자체개선계획서 및 자체개선완료보고서 제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고장 등의 사유로 교체(수리)할 경우,
사전에 자체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 후 자체개선완료보고서를 그린링크에 제출하여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작성 및 제출방법

1. 그린링크 누리집(www.greenlink.or.kr) 접속 및 로그인
2. [운영시스템] 클릭 [행정자료] - [자체개선계획] 클릭
3. [신규] 클릭 - ['사업장 ID', '배출구', '작성자', '제목', '내용'] 작성 - ['자체개선계획서 작성 및 파일'] 첨부 - [저장] - [제출] 클릭
   * 내용에는 고장 원인, 수리 및 교체 계획, 완료 예정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4. 관할 지자체 담당자가 자체개선계획서 내용 확인 후, 확인 또는 반려(문자로 결과 전송)
   * 반려 시, 반려사유 확인 후 수정(보완) 필요
5. 개선완료 후, 자체개선완료보고서 작성 및 제출

※자세한 사항은 그린링크 누리집 자료마당 참고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 사업장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4종 및 5종 사업장 중 6개 방지시설 (원심력 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시설과 그 배출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 1~3종 사업장 또는 4종 및 5종 사업장 중 위 6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대상이 아닙니다.

Q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부착 시기 및 부착완료일은 어떻게 되나요?

-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2022.5.3. 이전에 한 사업자는 2025.6.30.까지 부착**해야 하며, **2022.5.3.부터 가동개시 신고를 한 사업자는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해야 합니다.
- 1~3종 사업장을 4종 또는 5종 사업장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 **부착완료일은 사업장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날을 말합니다.**

Q 하나의 방지시설에 복수의 배출시설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모든 배출시설에 전류계를 설치해야 하나요?

- 배출 및 방지시설의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한 것으로 모든 배출시설에 전류계를 부착해야 합니다. (단, 방지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복수의 배출시설에 통합전원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방지시설과 연결된 배출시설의 통합전원에 전류계 부착 가능)
- 한편, 복수의 배출시설이 연속공정으로만 운영되고, 개별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대표가 되는 지점에 전류계 부착이 가능합니다.

※ (참고)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6. 환경부)

Q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려면 어떤 업체를 선정해야 하나요?

- **그린링크(www.greenlink.or.kr) ▶ 상단(IoT) ▶ 업체소개 ▶ IoT게이트웨이 제조업체 또는 IoT설치업체(협력업체)**에서 업체 리스트를 참고하여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Q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제출 서류 및 방법은?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 작성 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GreenLink) 안내

지원문의 1533-3301 팩스 032-590-4025
누리집 www.greenlink.or.kr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GreenLink)

대기 4종 및 5종 사업장은
2025. 6. 30.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확*민 / 환경관리과 / 2025-01-17 14:13:26

왜 부착해야 하나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푸른 하늘, 맑은 공기를 보전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에는 자동측정기기를 부착 하여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이에 따라, **대기 4종 및 5종 사업장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측정결과를 그린링크(www.greenlink.or.kr)에 전송해야 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제37조의 3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기한

- **2022.5.3. 이전 가동개시 신고를 한 사업자는 2025.6.30. 까지 부착**
- **2022.5.3. 부터 가동개시(변경 포함) 신고를 한 사업자는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부착**

(가동개시 신고일 전, IoT 측정기기 부착 및 그린링크 전송확인서 출력 필요)

※ 의무부착 기한 전, 조기부착 시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없음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대기 4종 및 5종 사업장 중 아래의 6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부착대상 방지시설	부착대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배출시설	방지시설
원심력집진시설	전류계	전류계
세정집진시설		전류계
여과집진시설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전기집진시설		전류계
흡수에 의한 시설		전류계, pH계
흡착에 의한 시설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 6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아님

어떻게 부착 하나요?

1 측정기기 설치업체 및 측정기기 선정

설치업체 및 측정기기 선정

- 통신프로토콜 버전이 3.0 이상인 게이트웨이 제공 업체
- 평균 오차 ±5% 이내인 측정기기
- 관련 사항 확인 경로: 그린링크 누리집 상단 (IoT) 메뉴 ▶ 업체소개 ▶ IoT 게이트웨이 제조업체 또는 IoT 설치업체(협력업체)

※ 업체 현황 및 측정기기 목록 매월 업데이트

2 그린링크 신규 가입 절차

그린링크(www.greenlink.or.kr) 접속 후 회원가입 클릭

⌄

사업자등록증, 담당자 재직증명서 등록 및 가입 승인 요청

⌄

관제센터의 서류 검토 후 승인 (미비 시 반려 및 보완 요청)

****주요 반려 사유**: 한국환경공단 양식 외 재직증명서 첨부 시**

3 측정기기 설치 및 사업장 정보 입력

측정기기 설치

- 가이드라인 내 '5.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위치 및 방법' 준수

사업장 및 측정기기 정보 등록 (그린링크 – 운영시스템)

- [사업장관리] - [기초정보관리] - [사업장정보관리], [배출구정보관리], [시설정보관리], [시설관계관리]

4 관할 지자체 서류 제출

주요 제출 서류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서식1) 및 구비서류
-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서식2)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증(신고증명서) 등

※ 자세한 사항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023.6. 환경부) 참고

어떤경우 부착 면제가 가능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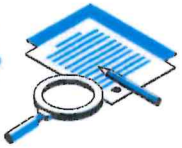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면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방지시설이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배출구와 연결된 경우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전력을 동력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류계만 부착 면제 (단, 방지시설의 상태정보 확인을 위한 차압계, 온도계, pH계는 해당 방지시설별로 각각 부착해야함)
3. 고정적인 전기사용 장치를 확인할 수 없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전류계만 부착 면제 (단, 방지시설의 상태정보 확인을 위한 차압계, 온도계, pH계는 해당 방지시설별로 각각 부착해야함)
4. 방지시설과 연결되는 배출시설이 복수인 경우로서 배출시설의 통합 전원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사유로 배출시설 중 일부에 부착 면제 가능(단,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5. 부착대상 시설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출시설을 폐쇄할 계획이 있는 경우
6.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7. 온도계와 pH계는 시설특성에 따라 부착 면제 가능(단,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8. 기타 사업장의 특성 등을 고려한 경우

※ 자세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3의2], 「시행규칙」 [별표 9의2]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023.6. 환경부) 참고